

기본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내규

〈본안〉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기본 재산을 관리하고 교회의 자립성장과 발전의 기금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교회자립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조직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

연회 감독

연회 총무

연회 서기

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

교역자 5명

평신도 5명

제 3조 (임원 및 임원의 선출) 위원회의 임원 및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위원장: 감독이 당연직으로 한다.

서기 1인: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분과위원장 각 1인: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임원 보선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.

제 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회에서 선출하는 교역자, 평신도는 1/2씩 순차적으로 교체한다.

제 5조 (직무)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기본재산 관리, 운용

교회자립 성장기금 조성 및 관리, 운용

지원 대상 교회 및 교회 개척 후보지 선정은 해당 위원회에 일임

교역자 선정

기타 위원회에 부합하는 사업

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

제 7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연회부담금: 부담금 비율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후원금 (교회, 단체, 개인)

감리회 본부 지원금 : 감리교 본부 지원금 중 일부로 충당한다.

기타 수입

제 8조 (기금의 관리) 기금의 관리는 연회본부에서 한다.

제 9조 (기금의 운용) 기금의 운용은 해당 분과 위원회의 제안으로 전체 위원회 출석 2/3 이상 찬성 후 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.

제 3 장 지원 기금 종목 및 지원 요건

제 10조 (지원 기금 종목 및 지원 요건)

① 교회 건축 부지 기금

교회 건축부지 매입 기금의 지원 한도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.

부지의 매매계약 체결은 매수자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하여야 한다.

지원받는 교회가 부지 매입비의 50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교회 건축 기금

교회 건축기금의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.

건축주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하여야 한다.

지원받는 교회가 건축비의 50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지원 기금의 신청

제 11조 (기금의 지원 신청) 기금의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기금의 지원 신청은 성장한 증거나 성장 요인이 있는 교회에 한한다.

지원받는 교회는 구역회의 결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의 소정 서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당해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(개정)

지원금 상환을 위하여 1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5명 이상의 교인으로 인우보증한다.

제 5 장 지원금의 회수

제 12조 (지원금의 회수)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수해야 한다.

지원받은 교회의 상환시기는 2010년 이전 교회는 15년으로 하고 2010년 이후 교회는 10년으로 한다. 2017년 1월 이후의 교회는 5년거치 3년안에 상환한다.

대출금 가산금은 연2%로 하되, 3년 후 부터 시행한다. 다만 연체 가산금은 연 5%로 한다. (개정 2017.4.18)

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당해 교회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재산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한 재산 중 회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처분권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연회가 보유한다.

불이행 시 기본재산관리특별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해당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(장정 제 1404단 제 4조 4,5항) 개정.

제 6장 부칙

제 13조 (내규 개정) 이 내규의 개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내적 2/3 이상의 결의로 한다.

제 14조 (기타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전체회의 결의에 의한다.

제 15조 이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2020년 4월 16일로 즉시 시행한다.

제 16조 이미 지원된 교회는 연장할 때 이 내규를 즉시, 적용한다.

참고사항

지원금 회수에 대한 법적장치

부지 매입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시 유지 재단에 편입하는 조건

건축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건축 시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는 조건

개척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건물 임차 시 유지재단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것을 제 10조에 규정하였음

법적 장치에 대한 보완

‘지원금 신청은 위원회의 소정 서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’는 제 12조 제 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서, 각서, 차용증서, 연대보증서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.